



제 4 1 7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52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웹소설 정의 신설	3
2. 출판사 폐업신고기간 연장	5
3.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8
4. 웹소설 및 웹툰에 관한 유통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12
※ 참고자료	
1. 도서정가제 개요 및 연혁	17
2. 관계 부처 의견	18
3. 관련 협회 등 의견	1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6. 17.

다. 회 부 일: 2024.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오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업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제22조제7항제5호·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11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웹소설 정의 신설(안 제2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웹소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로 정의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웹소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최초로 제작·공개된 소설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u>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¹⁾은 전자출판물을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웹툰을 전자출판물로 보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웹툰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²⁾에 정의된 반면, 웹소설은 법률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신산업인 웹소설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웹소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³⁾에서 전자책(e-book) 등 일반적인 전자출판물과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웹소설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의 웹소설 정의 조항은 안 제22조제7항제5호에서 규정한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부분⁴⁾과 연계되어 있는 바,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봄.

-
-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 3) 2022년 기준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 390억원이고,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명임(출처: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4) 동 검토보고서 8p.

2. 출판사 폐업신고기간 연장(안 제11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출판사의 폐업신고 기한을 현행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 ----- -----30일-----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의약품제조업 등 안전·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7일의 신고기한⁵⁾을 두는 데에 비해 출판업은 공공 안전 및 복리

5) 「약사법」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등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7일의 신고기한은 비교적 짧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⁶⁾, 특히 출판업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⁷⁾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 준수의 어려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⁸⁾.

이에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전 등과 관계되지 않은 사업의 폐업 신고 등은 그 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⁹⁾, 출판업 폐업은 국민안전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폐업신고기간 연장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 사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업 등의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6) 어린이집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폐업 2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2022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9,704개사)의 4.5%인 435개사에 불과함.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8)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10.10.)」에서 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 연장을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한 바 있음.

9) 영화업,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2.28.)됨에 따라 7일에서 30일로 연장됨.

[표 1]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한 입법례

법률명	관련 조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u>1개월 이내</u>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 5. (생략) <u><신설></u> ⑧ (생략)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2. ~ 5. (현행과 같음) 6.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등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양질의 출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7년부터 출판 및 서점업계 간 자율협약으로 실시해 오다가 대형마트, 인터넷서점의 대량 할인 판매로 자율협약이 무력화됨에 따라 2003년에 법제화되었음¹⁰⁾.

[표 2] 도서정가제 개요

도입 취지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
내용	발행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단,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물품,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조합하여 정가의 15% 이내 할인은 허용하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발행 후 12개월 경과 시 정가 변경 가능
적용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서 전자책, 웹툰, 웹소설 등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또는 전자출판물인증번호(ECN)를 발급받은 전자출판물 포함
규제 재검토	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폐지,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 의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웹소설 및 웹툰은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달리 연재 형태로 발행되고 작품 회차당 정가¹¹⁾가 낮아 작품 간 정가 차이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인기 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도서정가제 적용으로 인해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음.

10) 동 검토보고서 17p [참고1 도서정가제 연혁 및 개요] 참조

11) 네이버시리즈 및 카카오페이지의 회차당 소장 정가: 웹소설 100원 내외, 웹툰 400원~500원 내외

이에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에서 웹소설 및 웹툰을 제외하여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웹소설 및 웹툰 업계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 저자 양자의 혜택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웹소설 및 웹툰에 한정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조치는 종이 출판물이나 기타 순수 전자출판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해 최근 민관협의체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웹툰 및 웹소설의 특성¹²⁾을 고려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협의체 결정 내용¹³⁾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웹소설·웹툰 등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이 아닌 웹콘텐츠는 추후 별도의 제도로써 규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출판 및 웹툰·웹소설 관련 협회 측에서 제시한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에 대한 의견¹⁴⁾이 갈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웹콘텐츠의 구체적인 규율방안에 대해 관련 협회 등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한편, 현행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12) 문체부는 웹툰, 웹소설의 경우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며 산업 특성상 작품의 생산 및 소비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제27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에 관한 재검토를 통해 제도의 폐지, 강화·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규제 검토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웹소설·웹툰 등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이 아닌 웹콘텐츠는 추후 별도의 제도로써 규율할 수 있도록 노력’이었음.(2023.5.18. 민관협의체 합의)

14)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에 대해 웹툰 관련 협회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자출판협회 및 웹소설 관련 협회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동 검토보고서 19p [참고3 관련 협회 등 의견] 참조

기준 고시」에 따라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¹⁵⁾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전자출판물인증번호, ECN) 또는 「도서관법」 제21조¹⁶⁾의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 중에서 웹소설 및 웹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는 웹소설 및 웹툰을 별도로 분류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출판물인증번호(ECN)의 경우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료 사용으로 인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만 부여받는 출판사가 상당수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에 따른 도서정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웹소설 및 웹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시스템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15)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도서관법」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4. 웹소설 및 웹툰에 관한 유통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안 제23조, 제28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의 유통사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u><신설></u>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u>
3.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u>

<신 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신 설> ② ③ (생략)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 -----.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자 ②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할 시 유통사가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저자 및 출판사를 보호하여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23조제5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매촉진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금지·처벌 규정의 대상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상과 중복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조사·조치하게 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조치가 어려운 경우¹⁷⁾에는 안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매출액 및 매장 면적 등의 기준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적용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용되고 있음. 또한 각 법률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 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하지 않고 있음.(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등)

다만, 안 제23조제5항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적 조치를 의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표 2]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치) 관련 유사입법례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치)를 의무화한 입법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시정명령)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치)를 재량화한 입법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웹툰을 판매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동법상 금지행위 규정¹⁸⁾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우선적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지정하는 대신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제6항 6개월 내 필요조치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¹⁹⁾

문 의 처
02)6788-5380

18)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19) 동 검토보고서 18p [참고2 관계부처 의견] 참조

□ 도서정가제 개요

- 법적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 도입 취지 : △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
- 내 용 : 발행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 (간행물 정의)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및 ISBN(국제표준도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부여) 등을 표시한 것

- 단,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물품,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조합하여 정가의 15% 이내 할인은 허용하되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출판사가 정가 변경 가능

- 적용 대상 :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서 전자출판물 포함
 - *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도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중고 간행물, 국내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외국 발행 간행물은 제외
 - 웹툰, 웹소설 등 웹콘텐츠도 ISBN(또는 ECN) 등을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간행물에 해당되면 적용대상임
- 제도 재검토 결과 : 현행 유지하되,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방안 모색
 - *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명시(출판법 제27의2) / 금번시한 : '23.11.20.

□ 도서정가제 연혁

- ('77.12월) 출판·서점업계, 자율협약으로 정가판매제 시행
- ('03.2월) 대형마트, 인터넷서점의 대량 할인으로 자율협약이 무력화됨에 따라, 서점조합연합회의 입법 청원으로 출판·인쇄 진흥법 제정, 도서정가제 법제화
- ('08.1월) 오프라인서점 차별 삭제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 5년 한시적 시행 조항 삭제, 신간(18개월 이내)만 적용, 온라인·오프서점 동일하게 10%할인 허용
- ('12.7월) 전자책 정가제 본격 적용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14.11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 * 적용 범위 확대(발행 후 18개월 이내 → 모든 간행물), 할인율 인하(19→15%),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 등
- ('22.2월) 규제 재검토에 따라 개선 반영된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 * 재정가 가능 기한 축소(발행 후 18개월→12개월), 과태료 상향(300만원→500만원) 등
- ('23.8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근거를 명시하는 법률 조항 신설

참고 2

관계 부처 의견(공정거래위원회 우선조치권 부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우선조치권 부여(안 제23조제5항) 조항 수정	
	제23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⑤ ----- ----- ----- <u>위반하</u> <u>는 사실이 있는 경우</u> ----- ----- ----- 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우선조치권 부여(안 제23조제5항) 조항 수정	
	제23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소설·웹툰을 판매하는 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제50조)로 규율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 사.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7. 나.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7. 나. 2)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우선조치권 부여(안 제23조제6항) 조항 삭제 -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통보된 이후 관련 사실조사와 시정조치 등 처분은 관계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함	

참고 3

관련 협회 등 의견(웹소설 정의 및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 웹툰, 웹소설계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웹소설 작가협회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플랫폼사, 출판사, 매니지먼트사, 작가에게 모두 불이익이 될 문제이기에 반대함 - 오히려 100년 대여 등 제도 회피를 막기 위한 대여의 기간 법제화 필요함
한국전자출판협회	•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의2호) - 전자출판물 중 “웹소설”에 포함되지 않는 출판물도 상당수 존재 하기에 “웹소설”만 별도의 정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나 전자출판물 정의에 위배됨 - 유사 출판물인 “웹툰”은 별도 신설하지 않으면서 “웹소설”만 신설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법 개정으로 판단됨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그러나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해서 일반 E북 만화 단행본이나 소설과 다른 판매 유형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 현행 비대칭적인 산업 구조에서 웹툰, 웹소설 플랫폼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 또는 구독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덤핑 판매가 우려됨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의2호) - 웹소설은 연재의 특성을 갖고 있음. 현재안은 ‘신작을 정보통신망에 최초로 공개한 웹소설’과 ‘이미 출판된 구작을 웹소설 형태로 변형시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작품’을 구별해서 도서정가제를 구분해야 하나 쉽지 않고, 작가가 본의 아니게 범법행할 수 있음 - 웹소설에 ‘최초’라는 조건을 붙일 경우 작가들은 ‘종이책 출판’으로 먼저 출판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어 출판산업에 부정적 영향 - 종이책으로 출판된 구작을 웹소설 형태로 변형시켜서 디지털화 하여 연재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 제2창작으로 보아 웹소설로 간주해야함
한국웹소설 작가 연합	• 웹툰 및 웹소설 판매촉진 비용에 대한 저자, 출판사 부담 전가 금지(안 제23조제1항제3호) - 프로모션 제안/역제안 경우 개별적으로 합의 후 기대수익의 계산과 계산 이유를 공유하고, 출판사와 작가가 합당한 요율을 조정 요구가능해야함 -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그 비용에 걸맞게 비율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비용 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고, 자체 배너 등 자체 조달 시 비용 산정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 필요함 - 매출(순이익 X) 비율로 과태료를 정하는 것이 옳음.
한국웹툰 산업협회	• 웹툰 및 웹소설 판매촉진 비용에 대한 저자, 출판사 부담 전가 금지(안 제23조제1항제3호) - 웹툰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로 도서 정가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웹툰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출판계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출판인회의	•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의2호) - 정보통신망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된 것만 웹소설로 본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종이책 기반이 아닌 원천 콘텐츠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사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함 - 기존 법 또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에서 '소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에 '웹소설'의 정의규정에 '소설'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전자책과 웹소설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혼란 발생 가능함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도서정가제의 적용 여부는 매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생산 및 유통 구조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다양성 확보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예외 없이 적용해야 마땅함. - 개정안에서 밝힌 '웹소설'의 정의를 통해 '웹소설'과 '전자책',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위 경향성이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전자출판산업뿐만 아니라 출판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웹툰 및 웹소설 판매촉진 비용에 대한 저자, 출판사 부담 전가 금지(안 제23조제1항제3호) - 율의 위치에 있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절대적인 갑인 대형 플랫폼의 요구, 즉 합의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에,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없음.
대한출판문화협회	•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의2호) - 전자출판물과 구분이 모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창작물의 발행 방식 제한에 따른 권리자의 선택권 침해 우려도 있음. - 웹소설의 별도 정의가 아닌 웹툰/웹소설의 별도 식별체계를 신규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도서정가제 합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출판 산업의 발전, 건전한 출판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철회되어야 함